

##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

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23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### 1. 규 칙 명 :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### 2. 개정이유

-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,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  - 영동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 심사
  -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
-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  -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
-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개최의 통지(안 제4조)
-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(안 제9조)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32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
전부개정규칙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## 영동군의회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영동군의회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영동군의회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동군의회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영동군의회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영동군의회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

준수 여부 및 징계·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제5조(심문)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6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7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통보)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1조(위임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